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8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”을 “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본문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운영지원과장: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

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.

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중 “행정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병역판정검사과장: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.

제15조제4항제2호 단서 중 “행정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고객지원과장: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.

제1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“행정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4. 병역조사과장: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

제23조제1항 중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2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”를 “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”를 “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”로 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43조의2제2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

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”을 “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그 밖의 정원 1명(3급 또는 4급 1명)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각각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(5급 3명)”을 “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(5급 3명), 그 밖의 정원 1명(4급 1명)”으로 한다.

제46조를 삭제한다.

별표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다음에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”을 신설하고,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”를 삭제하며, 서기관 8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”를 신설하고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”를 신설하며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”를 삭제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”를 삭제한다.

별표 3의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다음에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”을 신설하고,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”를 삭제하며, 서기관 8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”를 신설하고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다음에 “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”를 신설하며, “서기관 또는

기술서기관 6”를 삭제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”를 삭제한다.

별표 5 일반직 계 60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”을 신설하고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”를 삭제한다.

별표 5의2 일반직 계 60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”을 신설하고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”를 삭제한다.

별표 6 서기관 3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”을 신설하고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 다음에 “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”를 신설하며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”를 삭제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”를 삭제한다.

별표 6의2 서기관 3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”을 신설하고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 다음에 “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”를 신설하며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”를 삭제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”를 삭제한다.

별표 6의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(상임위원) 1 다음에 “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”를 신설하고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대변인) 대변인은 <u>부이사관</u> · <u>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3조(대변인) ----- <u>부이사관</u> ·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-----.
제4조(감사담당관) 감사담당관은 <u>부이사관</u> · <u>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</u> <u>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4조(감사담당관) ----- <u>부이사관</u> ·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또 <u>는 서기관</u> -----.
제5조(기획조정관) ① (생 략)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 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</u> · <u>서기관</u> <u>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 ③ ~ ⑤ (생 략)	제5조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</u> · <u>과학기술</u> <u>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 은 <u>부이사관</u> · <u>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</u> <u>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6조(운영지원과) ----- -- <u>부이사관</u> ·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<u>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7조(병역자원국) ① (생 략) ② 병역자원국에 병역판정검사 과 · 병역조사과 · 정보기획과 · 데이터관리과 및 정보보호팀을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</u> · <u>서</u> <u>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하	제7조(병역자원국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</u> · <u>과</u> <u>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-----

고,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삭 제

④ ~ ⑧ (생 략)

제8조(입영동원국) ① (생 략)

② 입영동원국에 현역입영과·현역모집과·동원관리과 및 자원관리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 략)

제9조(사회복무국) ① (생 략)

②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정책과·사회복무관리과·산업지원과 및 병역공개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⑨ (생 략)

제9조의2(사회복무연수센터)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입영동원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회복무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사회복무연수센터) ① 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② ~ ⑤ (생 략) 제10조(중앙병역판정검사소) ① (생 략)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운영 지원과 및 병역판정검사과를 두되, 각 과장은 <u>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 ③·④ (생 략) 제11조(병무민원상담소)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과 및 전화상담과를 두되, 인터넷상담과장은 <u>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 ③·④ (생 략) 제12조(지방병무청장) ① (생 략) ②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각각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다만, 경남지방병무청장은 「행정기	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중앙병역판정검사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11조(병무민원상담소) ① 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② ----- ----- ----- <u>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지방병무청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
---	---

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13조(병역판정관) 병역판정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14조(병무지청장) 인천병무지청장·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인천병무지청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15조(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) ① ~ ③ (생략)
④ 각 과장 및 팀장은 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되, 다음 각 호의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.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제13조(병역판정관) -----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제14조(병무지청장)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. -----

-----.

제15조(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 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

-----.

1. 운영지원과장: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. 다만, 제주지방병무청은 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2. 병역판정검사과장: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. 다만, 서울지방병무청, 대구·경북지방병무청, 강원지방병무청, 충북지방병무청, 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은 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3. 고객지원과장: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. 다만, 서울지방병무청, 강원지방병무청은 행정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
1. 운영지원과장: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. ----- 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2. 병역판정검사과장: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. ---

----- 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3. 고객지원과장: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. -----

의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4. 병역조사과장: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 5. 서울지방병무청 정보관리과장: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 제23조(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) ① 입영동원관리국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② ~ ⑨ (생략) 제24조(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지부관리국) ① 사회복지부관리국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② ~ ⑥ (생략) 제39조(병역판정검사운영관) ①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<u>행정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 ② (생략) 제39조의2(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) ① 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	4. 병역조사과장: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5. ----- --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제23조(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) ① ----- 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② ~ ⑨ (현행과 같음) 제24조(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지부관리국) ① ----- 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39조(병역판정검사운영관) ① ----- <u>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39조의2(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) ① -----
--	--

원과 · 병역판정검사과 · 현역입
영과 · 동원관리과 · 사회복지과
및 고객지원과를 두되, 운영지
원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
· 행정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
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
무관으로, 그 밖의 과장은 행정
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
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
로 보한다.

② ~ ⑦ (생략)

제40조(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
과)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
영지원과 · 병역판정검사과 · 현
역입영과 · 동원관리과 · 사회복지
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, 운
영지원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
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의료기술사
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
신사무관으로, 그 밖의 과장은
행정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
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
관으로 보한다.

② ~ ⑦ (생략)

제41조(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
과)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
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
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
사무관으로----- 의료
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
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
로 보한다.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
과) ①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
서기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
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
행정사무관으로-----
의료기술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
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
관으로 보한다.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
과) ① -----

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
되,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·의
료기술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
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43조의2(대체역 심사위원회) ①
(생략)

②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
심사기획과 및 심사운영과를 두
되,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
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44조(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 ①병무청에 두는 공무원
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
「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
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
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
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
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
와 같다.

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
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
(4급 또는 5급 1명), 정보화업무
를 담당하는 2명(5급 1명, 6급 1
명),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

----- 의료기술사무관·
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
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3조의2(대체역 심사위원회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
또는 서기관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 ① -----
-----.

----- 10퍼센트--

-----.

② -----

담당하는 3명(7급 3명) 및 행정
심판·소송, 법제 업무를 담당
하는 1명(5급 1명)은 임기제공
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4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 ①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
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
3과 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
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
9조제2항 및 「병무청과 그 소
속기관 직제」 제27조제1항 단
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
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
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4
와 같으며, 별표 3의4의 정원 중
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
용한다.

② (생략)

③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
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
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
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
「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
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
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

----- 법제 업무를 담당하
는 1명(5급 1명), 그 밖의 정원
1명(3급 또는 4급 1명)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 ① -----

-----.

----- 10퍼센트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--- 10퍼센트-----

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.

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, 별표 6의2의 정원 중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⑤ (생략)

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사회복지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(9급 3명),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

-----.

④ -----

-----.

10퍼센트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병역판정검사업

무를 담당하는 3명(5급 3명)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(7급 22명, 8급 9명, 9급 10명),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4명(7급 3명, 8급 11명),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(9급 1명)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(8급 3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⑦ (생략)

제46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「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8조에서 “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”란 강원 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.

② 「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4조의 감사담당관 및 제10조제1항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을 지정하되,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무를 담당하는 3명(5급 3명), 그 밖의 정원 1명(4급 1명) -----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병무청 공무원 정원표(제44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<u>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6</u>	+6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 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5</u>	+15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6</u>	<u><삭 제></u>	-6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 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	<u>15</u>	<u><삭 제></u>	-15
·	·	·	



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의2]

병무청 공무원 정원표(제44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</u> <u>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</u> <u>기술서기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<u>서기관</u> 또는 <u>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6</u>	+6
<u>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</u> <u>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</u> <u>방송통신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15</u>	+15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6</u>	<u><삭 제></u>	-6
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</u> <u>관·전산사무관 또는</u> <u>방송통신사무관</u>	<u>15</u>	<u><삭 제></u>	-15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5]

병무민원상답소 공무원 정원표(제45조제3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서기관</u> 또는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과학기술서기관</u>			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5의2]

병무민원상답소 공무원 정원표(제45조제3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서기관</u> 또는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과학기술서기관</u>			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
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]

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(제45조제4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<u>서기관 또는</u> <u>과학기술서기관</u>	· · <u><신 설></u>	· · <u>7</u>	+7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</u> <u>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</u> <u>방송통신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9</u>	+9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7</u>	<u><삭 제></u>	-7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</u> <u>관 · 전산사무관 또는</u> <u>방송통신사무관</u>	<u>9</u>	<u><삭 제></u>	-9
· ·	· ·	· ·	

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의2]

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(제45조제4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<u>서기관 또는</u> <u>과학기술서기관</u>	· · <u><신 설></u>	· · <u>7</u>	+7
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</u> <u>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</u> <u>방송통신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9</u>	+9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7</u>	<u><삭 제></u>	-7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</u> <u>관 · 전산사무관 또는</u> <u>방송통신사무관</u>	<u>9</u>	<u><삭 제></u>	-9
· ·	· ·	· ·	

[별표 6의3]

대체역 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45조제7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•	•	•	
•	•	•	